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령 목록>

구분	소관부처	법령명
행정 안전부령	소방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 안전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 자원부령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석유광산안전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보건 복지부령	보건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 교통부령	국토 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제1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119구조·구급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
kr)”로 한다.

제2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won.go.kr)”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won.go.kr)”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
minwon.go.kr)”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44호의7서식 뒤쪽의 참고사항란 제1호 중 “민원24 인터넷 홈페
이지(www.minwon.go.kr)”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로 한다.

제3조(「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5조(「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6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정비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납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시·군·구 통보용)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정비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정비비용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납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별지 3]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설치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별지 4]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행정처분 통지서			
상호(명칭)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사업자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행정처분 내용			
귀 사업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해양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납 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⑦ 납 부 장 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직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과징금납부통지서(행정관청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납 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⑦ 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과징금납부통지서(납부자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납 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⑦ 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열어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우편반송용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납입고지서 재증

우체국

바코드 13mm

음성변환용(외부)

과 세 근 거

위반행위의 종류

산 출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음성변환용(내부)

납부번호			
납부자 주소		실명번호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년	월	일	
			원	
합 계 금 액				원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직인

년 월 일

수납인

**사·도
시·군·구**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납부자:

회계연도:

실명번호:

금융기관	징수관 계좌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원	
합 계 금 액			원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년 월 일

직인

년 월 일

수납인

담당자:

전자납부
번호

문의처:

■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안

제1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2조(「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3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광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하고, 같은 앞쪽의 시·도지사 확인사항란 중 “토지 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합니다)”로 한다.

제5조(「석유광산안전규칙」의 개정)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7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

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 제1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과 내 역

산 출 근 거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

납부자		실명번호	
주소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년	월	일	
합계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 후 수납불가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년 월 일

정수관

직인

년 월 일

수납인

안 내 말 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납부자:

실명번호:

금융 기관	징수관 계좌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년 월 일	
합계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 후 수납불가

담당자:

년 월 일

징수관

직인

수납인

수납인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토지 사용·수용의 인정신청서)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한다)</u> 을 <u>확인</u> 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 사용·수용의 인정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u> 를 <u>확인</u> 해야 -----.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제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제3호의2 및 제4호”를 “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물등기부 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힌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장 사본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 경우 이 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힌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통장 사본(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2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8호의5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①발행번호		
납 부 자	② 장기요양기관(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①발행번호		
납 부 자	② 장기요양기관(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납 부 자	② 장기요양기관(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257mm×182mm[보존용지(1종) 34g/㎡]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생략)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확인하여야</u> 한다.	② ----- ----- ----- <u>확인해야</u> ---- ----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u>토지등기부 등본과 건물등기부 등본</u> .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u>하여야</u> 한다.	1. ----- ----- ----- ----- <u>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u> . ----- ----- ----- <u>않는</u> ----- ----- <u>해야</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u>제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u>제출하여야</u> 한다.	① ----- ----- ----- ----- ----- ----- ---- <u>제출해야</u> -----, ----- ----- ----- ----- <u>제출해야</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② (생략)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기관의 수령	③ ----- -----

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④ 제2항 및 제3항(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힌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제출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제출 받은 경우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장 사본 ⑤ (현행과 같음)
---	--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를 “국가기술 자격증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2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2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5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제1호를”로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10부터 별지 12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 13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16

부터 별지 18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서류의 확인에”를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의 확인에”를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1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8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22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28부터 별지 30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차량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 31 및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12조(「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33과 같이 한다.

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34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37부터 별지 40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42 및 별지 제43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16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44 및 별지 4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낼 것을 알려드리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직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지방환경관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직인

257mm×182mm[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별지 2]

[별지 제10호서식]

(제 1 쪽)

고 지 서 원 부 (세 입 징 수 관 용)

발행번호						납기일			
회계연도						고지일			
납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입	납입자번호								
자	주 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 2 쪽)

고 지 서 겹 영 수 증 서 (납 입 자)

발행번호						납기일			
회계연도						고지일			
납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입	납입자번호								
자	주 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 3 쪽)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납기일			
회계연도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입	납입자번호			국고계좌:			
자	주 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가 산 금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기 후 금액				년 월 일			
(납 기)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 4 쪽)

납부서(한국은행용)

발행번호				납기일			
회계연도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입	납입자번호			국고계좌:			
자	주 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가산금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납기 후 금액				년 월 일			
(납기)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별지 3]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조정 부과 통지서
[] 환 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부과,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따라 차액을 조정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 조정 부과 [] 환 급				
계	부 과 금	미 수 부과금	[]조정 []환급 부과금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	[]납부 은행 []환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조정 부과 []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작 성 방 법

1. 수신 란에는 [] 조정 부과 [] 환급대상사업자(납부의무자)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를 명시한다.
2. 사유 란에는 [] 조정 부과 [] 환급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 /㎡(재활용품))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관리번호: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물이용 부담금 내역	물 사용량	ℓ	납부금액	원	사용기간	. . .부터 . . .까지
	물 사용량 산출 방법					

이	유	하
---	---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5]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

직 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2쪽)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 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 인

170mm×105mm(전산용지)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제3쪽)

발행번호				납기일			
회계연도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납부서(한국은행용)

(제4쪽)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별지 6]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조정 부과 통지서
[] 환 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부과,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따라 차액을 조정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 조정 부과 [] 환 급				
계	부 과 금	미 수 부과금	[]조정 []환급 부과금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	[]납부 은행 []환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조정 부과 []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작 성 방 법

- 수신 란에는 [] 조정 부과 [] 환급대상사업자(납부의무자)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를 명시한다.
- 사유 란에는 [] 조정 부과 [] 환급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재활용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관리번호: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물이용 부담금내역	물 사용량	ℓ	납부금액	원	사용기간	.부터 .까지
	물 사용량 산출방법					

이
이
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3 –

[별지 8]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제1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부통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납기일자 통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과징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직인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납기일자 통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사업등록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과징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3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기일자 통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은행()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4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부서(한국은행용)			납기일자 통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은행()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별지 9]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 입 자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납입자번호										
	주 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직 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2쪽)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 입 자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납입자번호								
	주 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국고수납대
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 인

(제3쪽)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제4쪽)

납 부 서(한국은행용)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 입 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별지 1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출부과금 [] 조정 부과 통지서
[] 환 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 부과,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따라 차액을 조정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 조정 부과 [] 환 급				
계	부 과 금	미 수 부과금	[]조정부과 []환 급 부과금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자	[]수 급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조정 부과 []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끝 .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1]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통지 번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제 호				
정보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 화 번 호 :)		
공개 여부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공개 시점		년 월 일부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3항에 따라 소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 53 –

[별지 1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별지 1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지내용	당초 납부기한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연장 허용 또는 연장 불허용의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불허용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별지 15]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과기간	납부고지 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한 간격

분할납부 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1 차	. . .	
2 차	. . .	
3 차	. . .	
4 차	. . .	
5 차	. . .	
6 차	. . .	
합 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불허용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16]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직 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2쪽)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 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 인

170mm×105mm(전산용지)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제3쪽)

발행번호				납기일			
회계연도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납 부 서(한국은행용)

(제4쪽)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별지 17]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조정 부과 [] 환 급 통지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부과,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따라 차액을 조정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 조정 부과		[] 환 급		
계	부 과 금	미 수 부과금	[]조정 []환급 부과금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	[]납부 은행 []환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조정 부과 []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작 성 방 법

- 수신 란에는 [] 조정 부과 [] 환급대상사업자(납부의무자)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를 명시한다.
- 사유 란에는 [] 조정 부과 [] 환급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 /㎡(재활용품))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관리번호: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물이용 부담금 내역	물 사용량	ℓ	납부금액	원	사용기간	. . .부터 . . .까지
	물 사용량 산출 방법					

이	예	지
---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순환자원 인정 취소내용	취소사유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취득, 2. 순환자원 기준 미충족			취소일자(취소를 통보받은 일자):				
	대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보관량(톤)				
폐기물 처리결과	폐기물		운반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연/톤)
		□□-□□-□□						
		□□-□□-□□						
		□□-□□-□□						
처리완료일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취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인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같은 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징수유예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승인 []불승인 통지서**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불승인의 이유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승인, []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21]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 의무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2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제품	포장재 재질・구조	제품명
	위반사항	
개선명령 내용	개선명령 이행기간	
	개선명령 내용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포
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직인

[별지 2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포장재 · 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 중단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중단명령 내 용	중단명령 기간	
	포장재 재질・구조	
	제 품 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의
의

환경부 장관 직인

[별지 24]

[별지 제2호의4서식]

(제 1 면)

산 출 근 거

-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 ☐ 재 활용 용 부 과 금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재 활용 용 부 과 금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재 활용 용 부 과 금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세관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수납인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재 활용 용 부 과 금

납부서(한국은행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105mm(전산용지)

[별지 25]

[별지 제2호의5서식]

(제 1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품 목	
--------------	--	-----	--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년 월 일		원
납부기한		납 기 후 금 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입신고(수입증인)번호		품 목	
--------------	--	-----	--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품 목	
--------------	--	-----	--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납부서(한국은행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수입신고(수입증인)번호		품 목	
--------------	--	-----	--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105mm(전산용지)

[별지 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불승인
☐ 징수유예기간연장

관리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 또 는 명 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목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불승인의 이유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부자	성 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 인		

[별지 28]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2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 × 105mm (전산용지)

(제2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2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 × 105mm (전산용지)

(제3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영수증필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2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 × 105mm(전산용지)

(제4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2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 × 105mm(전산용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결정 통지서
[] 거부결정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 호 또는 명 칭					
사 업 장 소재 지					
사업의 종류			종 목		
부과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하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거부결정의 이유					
귀하가 20 . . . 에 신청한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거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 인			

[별지 3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부과금징수유예·분할납부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부과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5항·제6항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통보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합니다.

1. 매립시설 종류:
2. 매립시설 소재지:
3. 설치 승인(허가)일:
4. 납부방법:
5. 납부기한: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등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또는 사전적립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기한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개요

⑩차종(명)	⑪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⑫제작사	⑬형식승인 번호	⑭최초 차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⑯최대 적재량(톤)
⑰차량증 발급번호·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

[] 전 용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임 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차량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요령

- ①, ②, ③, ④란은 운반증 발급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명(법인명 또는 직함도 가능)을 적고 공동수집·운반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소재지·상호 등을 적은 업소 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
- ⑤란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 ⑥란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적되, 성질·상태를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 ⑦란은 무게단위인 톤(액상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되,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일 또는 톤/월로 적어야 합니다.
- ⑧란은 발생지와 운반지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별지 33]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①발 행 번 호	
② 상 호 (명 칭)	
납 성 명 (대 표 자)	
부 주 소	
자	
③위 반 일 자	
④위 반 행 위	
⑤납 부 금 액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기 관	
「하수도법」 제50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바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지방환경관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①발 행 번 호	
② 상 호 (명 칭)	
납 성 명 (대 표 자)	
부 주 소	
자	
③위 반 일 자	
④위 반 행 위	
⑤납 부 금 액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지바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발 행 번 호	
② 상 호 (명 칭)	
납 성 명 (대 표 자)	
부 주 소	
자	
③위 반 일 자	
④위 반 행 위	
⑤납 부 금 액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지바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별지 3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제1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세입징수관 :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제2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제3쪽)

발행번호		납기일				
회계연도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납입자번호 주 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도 월			
납기 내 금액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납 부 서(한국은행용)

(제4쪽)

발행번호					납기일자				
회계연도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납입자번호 주 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도 월				
납기 내 금액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영수인 				

170mm×105mm(전산용지)

[별지 3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조정 부과 통지서
[] 환 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6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부과,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따라 차액을 조정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 조정 부과		[] 환 급		
계	부과금	미 수 부과금	[]조정 []환급 부과금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	[]납부 은행 []환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조정 부과 []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작 성 방 법

- 수신 란에는 [] 조정 부과 [] 환급대상사업자(납부의무자)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를 명시한다.
- 사유 란에는 [] 조정 부과 [] 환급 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재활용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관리번호: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물이용 부담금 내역	물 사용량	ℓ	납부금액	원	사용기간	. . .부터 . . .까지
	물 사용량 산출 방법					

이	아	하
---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3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별지 3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지내용	당초 납부기한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연장 허용 또는 연장 불허용의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불허용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별지 3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과기간	납부고지 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한 간격

분할납부 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1 차	. . .	
2 차	. . .	
3 차	. . .	
4 차	. . .	
5 차	. . .	
6 차	. . .	
합 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불허용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4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번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심사결과	유독물질 해당 여부	☐ 유독물질 ☐ 해당 없음 ☐ 기타 ☐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별지 4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1. 분납고지서

(앞쪽)

발행기관 번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①성명		④발행번호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⑤배기량		⑥차량 번호						
⑦ 년도 반기분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⑨	납부 기한					
부담금 내용									
⑩ 총계	⑪ 납기 내 금액	⑫ 납기 후 가산금	⑬ 미납 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⑭전자납부번호									
⑮가상계좌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수납기관 보관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①성명		④발행번호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⑤배기량		⑥차량 번호						
⑦ 년도 반기분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⑨	납부 기한					
부담금 내용									
⑩ 총계	⑪ 납기 내 금액	⑫ 납기 후 가산금	⑬ 미납 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⑭전자납부번호									
⑮가상계좌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부과기관 통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①성명		④발행번호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⑤배기량		⑥차량 번호						
⑦ 년도 반기분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⑨	납부 기한					
부담금 내용									
⑩ 총계	⑪ 납기 내 금액	⑫ 납기 후 가산금	⑬ 미납 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⑭전자납부번호									
⑮가상계좌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 통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①성명		④발행번호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⑤배기량		⑥차량 번호						
⑦ 년도 반기분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⑨	납부 기한					
부담금 내용									
⑩ 총계	⑪ 납기 내 금액	⑫ 납기 후 가산금	⑬ 미납 부담금						
원	원	원	원	원					
⑭전자납부번호									
⑮가상계좌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납부자 보관용)

297×210mm[백상지 80g/㎡]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용)

유의사항

1.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납부담금이 적혀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납부담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직접납부와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자동차의 오염 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7.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8.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가 감면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납기 마감일 7일 전까지 일시납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2. 일시 납부고지서

(앞쪽)

발행기관 번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①성명				④발행번호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⑤ 배기량				⑥ 차량 번호					
⑦ 년도분										
⑧부과기관 및 코드번호					⑨ 납부 기한					
부담금 내용										
⑩납부금액										원
⑭전자납부번호										
⑮가상계좌										
년 월 일										
수납날짜도장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수납기관 보관용)

(부과기관 통보용)

(환경부 통보용)

(납부자 보관용)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용)

유의사항

1.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납부담금이 적혀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납부담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직접납부와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자동차의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7.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별지 42]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불허용 통지서

신청인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부과 기간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 금액	분할납부 금액	차감 부과 금액

분할납부 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납부해야 할 금액
	1차			
	2차			
	3차			
	합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귀하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허용 []불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43]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부과 통지서
[]환급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납부의무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조정 부과 내용 []환급 내용	계		
	부담금	가산금	미납부담금
	[]조정 부과금 []환급 부과금		
	[]조정 부과 결정일 []환급 결정일		
	[]수납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사유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 부과 []환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직인

작성방법

1. 납부의무자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 대상 시설물의 상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시설물 주소를 적습니다.
2. 사유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과내역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산출근거	납부자		실명번호	
	주 소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년 월 일		
				원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후 수납불가		
담당자 :				
년 월 일	환경부 (인)		년 월 일	

수납인

[별지 45]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부과/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계	부과금	미 수 부과금	조정부과금/ 환급금	(조정부과/환급) 결정일자	(수급/환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타
대기							
수질							
(조정부과/환급) 사유: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이 통지서에 따라 차액을 조정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u>확인하여야</u> 한 다. <u>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 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u>법인등기부 등본</u> 2. (생 략) ③ (생 략)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확인해야</u> ----- --. <u>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해야 한다.</u> 1.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u>확인하여야</u>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u>하여야</u> 한다. 1. (생략) 2. <u>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등기부 등본</u> 3. ~ 5. (생략)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확인해야</u> ----- --. ----- ----- <u>않는</u> ----- ----- -- <u>해야</u> -----. 1. (현행과 같음) 2. <u>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u> 3. ~ 5. (현행과 같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1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③ ~ ⑤ (생략)

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 토지 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
-----.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
당한다)·사업자등록증 및 국가
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
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
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
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해야 -----.
-----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
----- 않는 -----
---- 해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확인
해야 -----. ----- 사
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
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
----- 않

다.	<u>는</u> ----- <u>해야</u>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2항 본문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등기부 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의 처리기관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란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4조(「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공향시설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향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37 및 별지 38과 같이 한다.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 39부터 별지 44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45와 같이 한다.

제9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Portal(www.minwon.go.kr)”을 각각 “Portal(www.gov.kr)”로 한다.

제10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4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민원 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11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4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48과 같이 한다.

제1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49와 같이 한다.

제14조(「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15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50과 같이 한다.

제1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1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5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관용)				
관리번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평가대상 토지	소재지		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m ²)	
납부고지금액	금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인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 위 고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m²(재활용품)]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납부자 보관용)				
관리번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평가대상 토지	소재지		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m ²)	
납부고지금액	금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인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 위 고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2]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국토교통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청 보관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직인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고지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산출 근거 및 이의신청 안내

1.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제25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

2. 산출방법

$(A-B) \times \text{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times \text{부과율}$

- A: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B: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 이의신청

이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 뒤쪽 참조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국토교통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청에의 통보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앞쪽)

(뒤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영수확인통지서	
(납부의무자용)	
관리번호	
행위허가 내용	
납부자 주소	
납부자 성명 (대표자)	
납부금액 (납기 내)	
가산금	
납기 후 년 월 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	
납부 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가로 475mm 세로 268mm 각편(가로 95mm 세로 268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3]

[별지 제4호서식]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및 납부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성명(법인의 명칭)				
주 소				
평 가 대 상 토 지	소재지		필지 수 및 면적(㎡)	
납 부 고 지 금 액	금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직인				
구비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위 치			
업 종		공사(사업) 기 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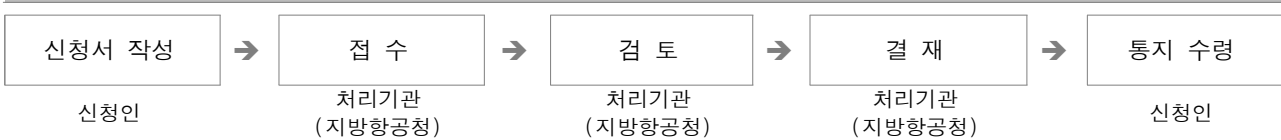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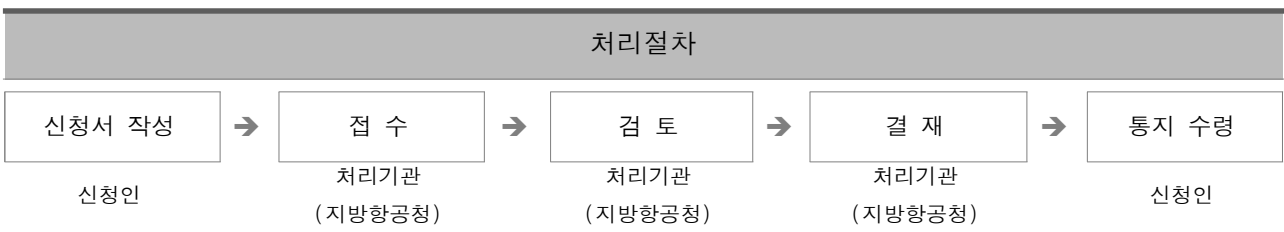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합니다) 3. 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4.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5.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6.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합니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7. 해당 비행장의 소요 구역도면 및 인접구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9.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합니다) 10.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육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수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12. 육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육상헬기장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다.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6]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비행장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위 치			
허가일자		착공예정일	
업 종		공사(사업) 기간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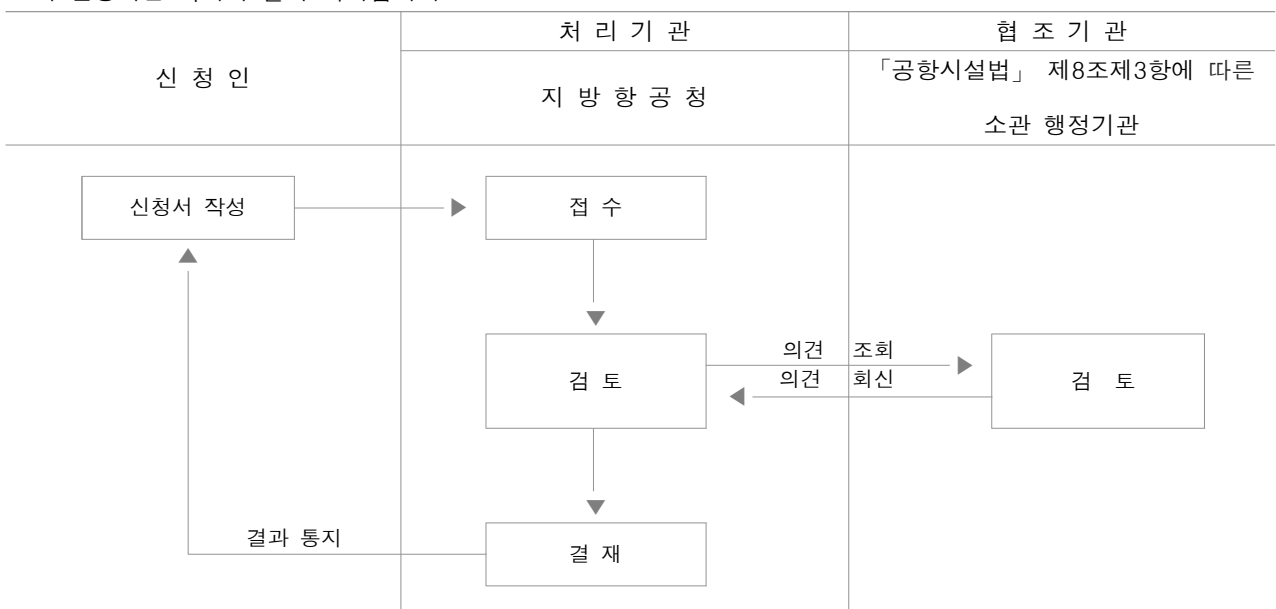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에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7]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비행장개발사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위 치		
승인일자	착 공 일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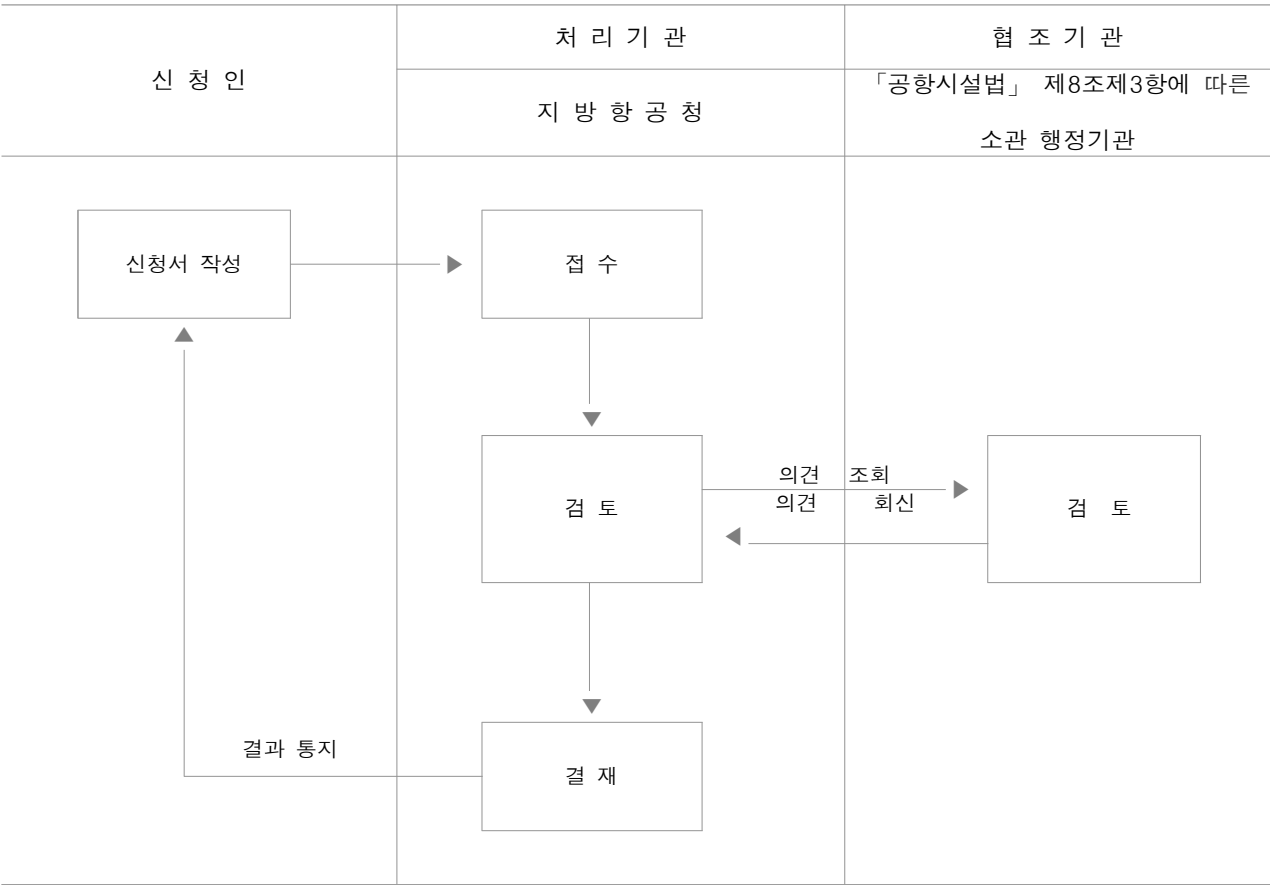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8]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항
비행장 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 고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내 용		
위 치		
허가일자	착 공 일	
업 종	완공예정일	

「공항시설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사업)의 개요서 3. 공사설명서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5. 공사에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지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지방항공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9]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개월
매수 청구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권리자의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2				
3				

매수청구 사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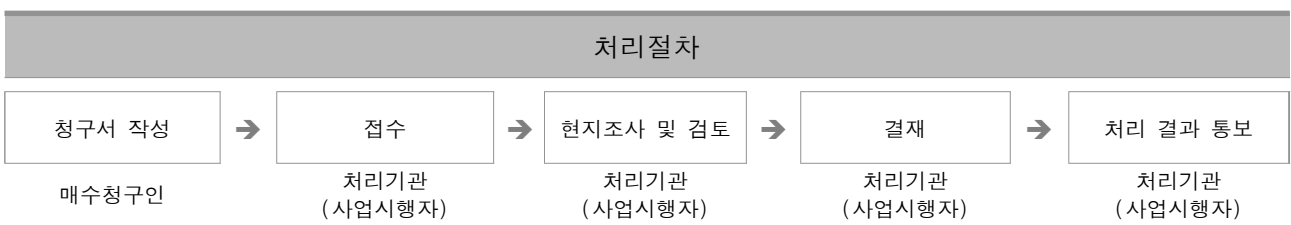
「공항시설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
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사업시행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0]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사업시행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성 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매 수 대 상 토 지	소 재 지		
	필 지 수	면적(㎡)	
납 부 고 지 금 액			
납 부 기 한			

「공항시설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붙임: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직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납부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성 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매 수 대 상 토 지	소 재 지		
	필 지 수	면적(㎡)	
납 부 고 지 금 액			
납 부 기 한			

「공항시설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직인

[별지 11]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공사준공
[] 이착륙장 공사준공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보 고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허가일	
위 치			
시설규모 또 는 면적			
총공사비		공사기간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공사준공,
[]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보고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시공품질검사내역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9 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합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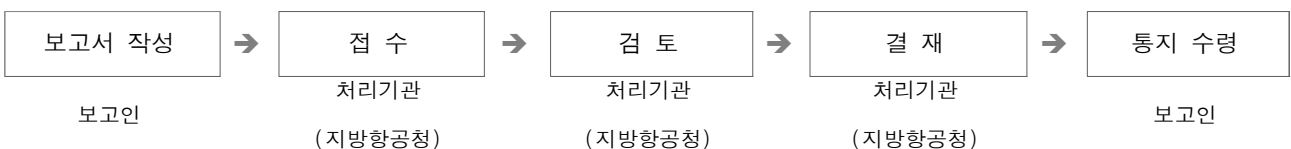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2]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준공확인 전
[]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실시계획승인일		
위 치					
시설규모 또 는 면적					
사용허가 신청내용					
임시사용 기 간			공사완료 예 정 일		
총공사비			공사기간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 준공확인 전, []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9 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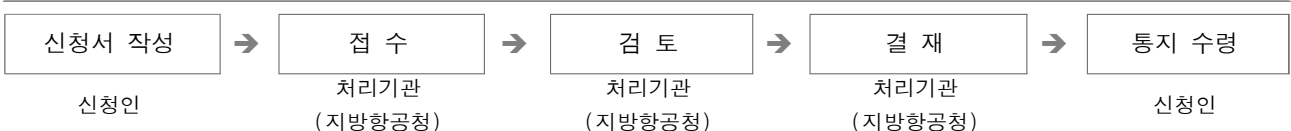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3]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위치			
업종		공사(사업)	
		기간	

「공항시설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2.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공사에정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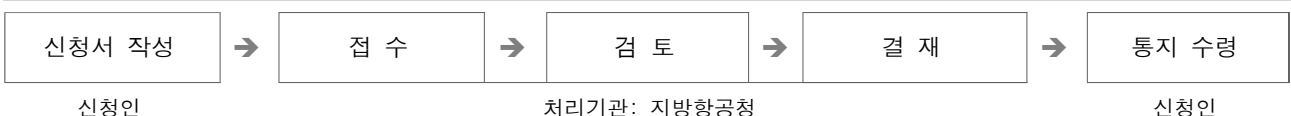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4]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등급)		
위 치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공항시설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2. 이착륙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착륙장 설치공사 예정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3. 소유자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개략적인 공사비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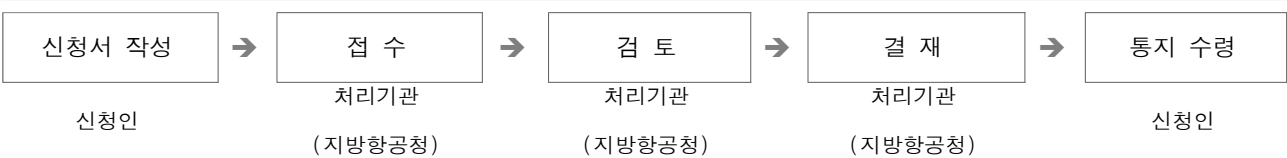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5]

■ 공항시설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공항시설

[] 비행장시설 사용료의

[] 항행안전시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단, 승인 및 변경승인은 25일)	
신고인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신청)	명칭				
내용	위치				

「공항시설법」 제32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항·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신고(변경신고)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사용료 요금표(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합니다) 3.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사용료 감면 절차 및 감면 비율을 포함합니다)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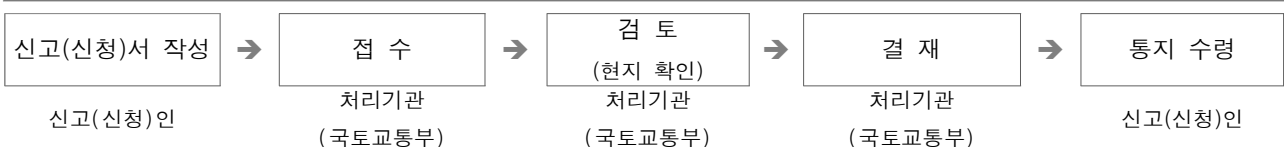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6]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공항시설

☐ 휴지

☐ 승인신청서

☐ 비행장시설 사용 ☐ 폐지

☐ 신고서

☐ 항행안전시설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단, 승인 사항은 30일)
------	------	-----------------------------

신청인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명 칭	
위 치	

휴지 · 폐지 · 사용 재개 일시

「공항시설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공항시설 ☐ 휴지 ☐ 승인신청서
☐ 비행장시설 사용 ☐ 폐지 에 관한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항행안전시설 ☐ 재개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항공교통본부장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 2.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시기를 적은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신청(신고)인	→	접 수	→	검 토 (현지 확인)	→	결 재	→	통지 수령 신청(신고)인
--------------------------	---	-----	---	----------------	---	-----	---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7]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매수 청구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매수를 청구하는 장애물 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장애물 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권리자의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2				
3				

매수청구 사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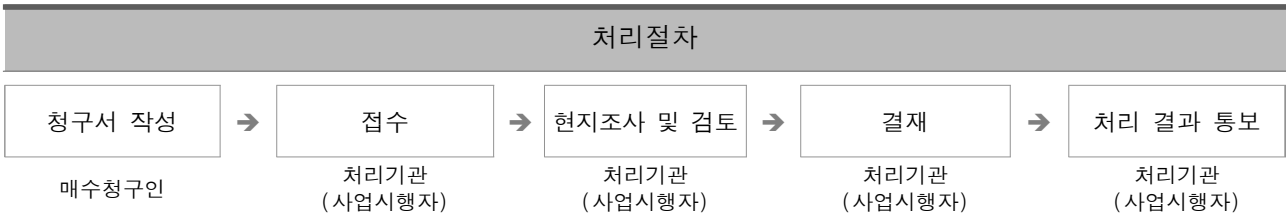
「공항시설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시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수수료 없음
------	--	-----------



[별지 18]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 개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1. 주 소	건축물·구조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소(해당 부지의 위도와 경도를 병행 표시합니다)		
2. 위 치	건축물·구조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의 좌표[부지의 좌표를 백분의 일초 단위까지 적고 기준 좌표계(WGS84, GRS80) 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3. 부지고도	건축물·구조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의 해발 높이(지반고와 계획고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설치내용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구조물 등의 최고 높이 및 면적(안테나 등 구 밖에 구조물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5. 구 조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구조물 등의 구조 [] 안테나 [] 크레인 [] 건물 [] 전선 [] 성토 [] 기타		

「공항시설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기 건축물·구조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작성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심의·의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	결과 통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9]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9. 21.>

항공장애표시등(www.항공장애표시등.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장애 표시등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장애물	소재지	장애물 명칭	
	좌표(WGS-84)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소재지 표고 해면상: m	장애물 종류	
	높이(피뢰침 등 부속구조물 포함) 지면(또는 수면)상: m, 해면상: m	장애물 크기 가로: m, 세로: m	
	공항비행장과의 관계 거리: km, 방위:		
항공장애 표시등	고광도	A형 개, B형 개	동시점광 여부
	중광도	A형 개, B형 개, C형 개	동시점광 여부
	저광도	A형 개, B형 개, C형 개, D형 개, E형 개	동시점광 여부
항공장애 주간표지	도색 [], 표지구 [], 깃발 []		도색등분
			모양 및 색상
			기타 표지물
설치연월일			
관리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공항시설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1부 2.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검토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결재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통지 수령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0]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시설 관리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하는 공항운영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공항의 개 요	명칭	
	위치	
	표고	
	표점	
	주요 운항형태 (복수선택 가능)	[] 국제정기편운항 [] 국제부정기편운항 [] 국내정기편운항 [] 국내부정기편운항 [] 소형항공기운항
	사용예정인 최대 항공기 기종(등급)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1]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 증명번호		제 호	
공항	변경 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운영 등급	변경 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변경 사유					
변경의 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선이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합니다)를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기재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운영하려는 공항운영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신청 사유		
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항운영규정(「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합니다) 2부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서류 4.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 공항정보 양식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3]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변경 사유		
변경의 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2. 신·구 내용 대비표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4]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 고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항의 명칭		
공항운영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변경 사유		
변경의 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인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신·구 내용 대비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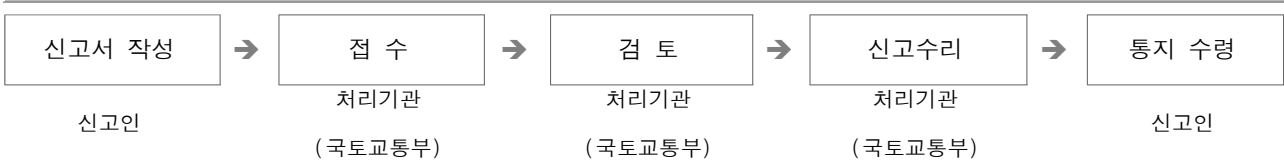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5]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승 계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승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위 치		
설치허가일		승계시기
승계의 조건		

「공항시설법」 제42조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42조에 따라 [] 비행장개발 사업
시행자(관리·운영자),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항공교통본부장

신고인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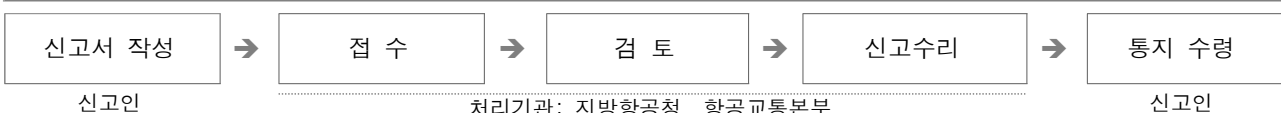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착 공	완 공		
예정일	예정일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항공교통본부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지 수령
신청인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7]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위 치			
허가일자		착공예정일	
업 종		공사(사업) 기간	

「공항시설법」 제4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항공교통본부장

신청인	1.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8]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 칭		
위 치		
승인일자		착 공 일

「공항시설법」 제4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항공교통본부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시계획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착공일		완공일

설치허가연월일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 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공사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완성검사조서 2. 준공설계도서(해당 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준공사진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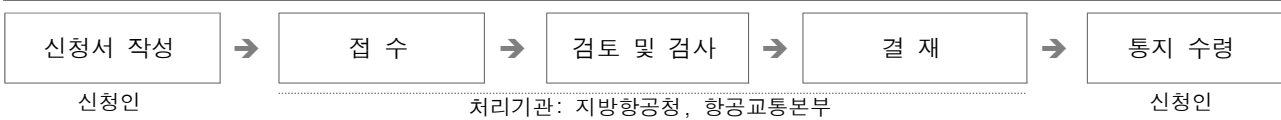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착공일				완성검사	
				합 격 일	
설치허가연월일			사용개시 예정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항공교통본부장

신고인	1.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31]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설치허가 연월일		
착공일	완성검사	
	합 격 일	

「공항시설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
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항공교통본부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의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3. 변경 사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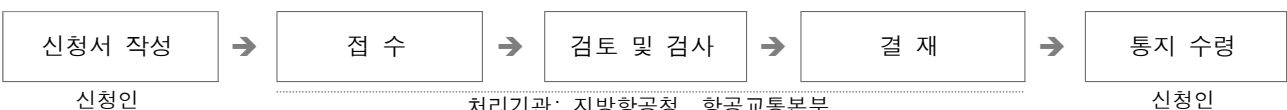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항행안전무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

[] 항공정보통신시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형식번호	
제 작			
일련번호			
제작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계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계도서 2. 부품표 3. 제작된 시설의 성능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4. 지상·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5. 그 밖의 참고사항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항시설·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출입하려는 시설의 내용		
출입목적		
출입예정기간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항시설·비행장시설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담당 공무원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확인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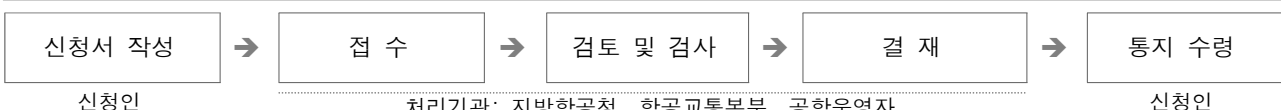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공항운영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방사 위치	주소 (현장 연락처 :)	
	위도 ____도(°) ____분(') ____초(")	경도 ____도(°) ____분(') ____초(")
방사 목적		
방사 일시		

「공항시설법」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레이저광선 방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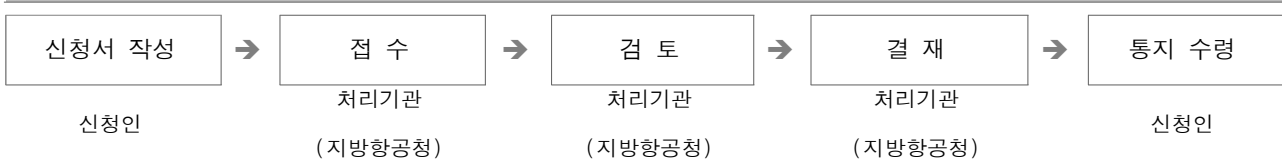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레이저 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발사 개요	발사 위치, 발사 일시 등을 기록합니다.	
발사 목적		
발사 형태	발사하고자 하는 불꽃 등의 종류 및 규격, 수량, 발사 최고 예상높이	

「공항시설법」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불꽃등의 발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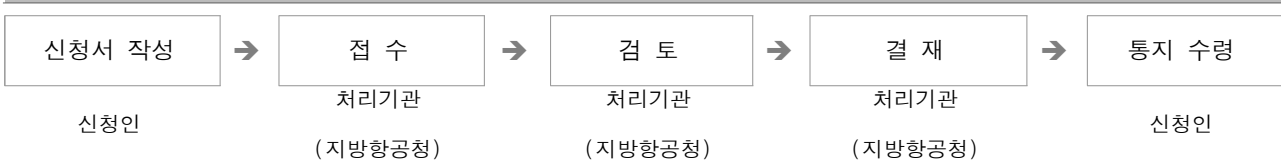
지방항공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확인사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36]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금지행위 위반자 통보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시설 관리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반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반 사항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제지 또는 퇴거명령 위반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법령 위반 규정	공항시설법 위반 규정을 기록합니다.	
위반 행위 요 지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
이 [] 공항 [] 비행장 [] 이착륙장에서 금지행위 위반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시설관리자 제출서류	1. 「공항시설법」 제5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2.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 및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기재한 서류 3. 법 제1호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서 또는 의견서(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별지 37]

[별지 제5호의2서식]

원상회복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사항	
	소재지	
명령사항	원상회복면적	m ²
	명령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직인

[별지 3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용부담내역				
사업 명칭				
비용부담 대상지				
기반시설 개요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산출근거				
납부 방법 및 납부 장소			납부 기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공사의 종류			
공사시행 구 간	부터 까지 (킬로미터)		
공사시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공사시행 이 유			

「도로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의 시행을 명하니, 첨부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귀하

첨부서류	설계도서
------	------

유의사항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0]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서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유지·관리 구 간	부터 까지 (킬로미터)		
유지·관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유지·관리 사 유			

「도로법」 제33조제1항·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의 유지·관리를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비용예산서
------	---------------------------------

타공작물의 유지·관리 통지서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타공작물의 명칭			
타공작물의 위치			
유지·관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유지·관리 이유			

「도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공작물을 유지·관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비용예산서
------	---------------------------------

[별지 42]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관 리 번 호			
(법인·의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평 가 대 상 토 지	소 재 지		
	필 지 수	면적(㎡)	
납 부 고 지 금 액			
납 부 기 한			

「도로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첨부서류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납부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법인·의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평 가 대 상 토 지	소 재 지		
	필 지 수	면적(㎡)	
납 부 고 지 금 액			
납 부 기 한			

「도로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첨부서류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별지 43]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부담대상		위치	
부담금액			
기간			
이유			

「도로법」 제87조제1항·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설계도서
------	------

[별지 44]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수 신

도로관리청

직인

제 목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도로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 제90조제3항,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 부담을 명령하니 별첨 설계도서와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에 따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		노선명	
부담대상		위치	
부담금액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유			

첨부서류: 1. 설계도서
2.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끝.

[별지 45]

[별지 제16호서식]

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납 부 의무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또는 소 재 지			
부 담 금 의 명 세				
대상시설명				
비용의총액				
부 과 금 액				
부 과 기 준				
납 부 방 법			납 부 기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귀 하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4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서

매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허가사항	불허가사유					
	대 상 권 리		예정금액(원)			
	번 호	소 재 지	지 목		면적(㎡)	이용목적
			법 정	현 실		
정 착 물	종 류		내 용		예정금액(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지 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4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부담금의 명세

대상 시설명		
비용의 총액	원	
부과금액	원	
부과기준	* 감면 시 감면근거 명시	
납부방법		납부기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9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4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부담금 납부통지를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별지 4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위반일자		
④부과기준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납부장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위반일자		
④부과기준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위반일자		
④부과기준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257mm×182mm[백상지 80g/㎡]

[별지 49]

[별지 제5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성명 (대표자)	
납부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수납인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시·도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성명 (대표자)	
납부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도지사 귀하		수납인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성명 (대표자)	
납부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도지사 직인		수납인

257mm×182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51]

[별지 제23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 납부통지서(행정관청 보관용)

과징금 납부통지서(납부자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납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납 부 장 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인	
	수납인

① 발 행 번 호	
② 납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인	
	수납인

① 발 행 번 호	
② 납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수납인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m²)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생략)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u>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u> 한다. 다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u>하여야</u> 한다.	② ----- ----- ----- ----- ----- ----- <u>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u> ----- -----. ----- ----- <u>않는</u> ----- ----- <u>해야</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u>토지등기부 등본</u>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u>확인하여야</u> 한다. 1. ~ 3. (생략) 제21조(물납신청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u>등기부 등본</u>을 <u>확인하여야</u> 한다. ③ (생략)	----- <u>제출해야</u> ----- ----- -----. ----- ----- ----- ----- <u>토지 등기 사항증명서</u> ----- --- <u>확인해야</u>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물납신청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첨부해야</u> ----- ---. ----- ----- ----- --- <u>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u> ---. ③ (현행과 같음)
---	--